중학교(강동)

번 호	명 칭	위 치
28	천일중학교	강동구 천호동 313-5

중학교(강서)

번 호	명 칭	위 치
23	방원중학교	강서구 방화동 475-1
24	삼정중학교	강서구 방화동 산 143-1

중학교(강남)

번 호	명 칭	위 치
29	대왕중학교	강남구 수서동 672

〔별표 3〕의 고등학교중 "한성과학고등학교"란 다음에 "강남공업고등학교", "강서공업고등학교",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남서울상업고등학교"를 "서울상업고등학교"로,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서울공업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3〕

고등학교

번 호	명 칭	위 치
71	강남공업고등학교	강남구 일원동 63-1
72	강서공업고등학교	강서구 방화동 301-1
73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	서초구 방배동 27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서울特別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診療業務手當支給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敎育監 提出)

(15時 13分)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診療業務手當支給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敎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局長 李成卓 社會敎育體育局長 提案說明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診療業務手當支給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改正理由는 地方醫務職列公務員에게 支給하는 醫療業務手當을 現實化하고, 계급에 基準을 두어 支給하던 手當體系를 계급 및 所持資格證에 따라 支給하기 위하여 本 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는 題名을 서울特別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診療業務手當支給에關한條例에서 서울特別市敎育監所屬地方醫務職列公務員手當支給에關한條例로 變更하고, 醫務職列公務員에게 支給하는 醫療業務手當을 서울特別市立病院 및 行政區廳單位 保健所 水準으로 引上 現實化하여 계급 및 所持 資格證 따라 支給하며, 專任專門職醫師에 대한 條項을 削除하고자 합니다.

條例改正根據는 地方公務員手當規程 第14條 및 醫療職 地方公務員 特殊業務手當變更承認 敎育部 敎行에 의한 것입니다. 改正內容은 신구대조표로 參考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今年 文化敎育委員會에서 行政監査 및 豫決算審議 때 學校健康管理所에 대한 指摘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指摘하신 것 중 弘報活動은 지금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고 健康管理所에 대한 運營에 대해서는 세부 분석을 해서 지금 檢討 中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 서울特別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診療業務手當支給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 告)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1993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사유

지방의무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현실화하고 계급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 체계를 계급 및 소지자격증에 따라 지급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명중 "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을 "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당"으로 변경

나. 지방의무직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현실화하고 계급 및 소지자격증에 따라 지급

다. 전임전문직의사에 대한 조항 삭제

4. 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나. 의료직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변경 승인 【교육부 교행 11250－487('93. 7. 15)】

5. 검토의견

가.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문개정으로 되어 있음.

○ 1975. 11. 28 제정되고, 1976. 11. 19, 1980. 1. 23, 1984. 2. 16, 1989. 3. 15 제4차 개정을 거친 현행조례는 3개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조례는 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 제명도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이지만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지방의무직렬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 현행 조례개정 당시에는 진료업무수당 지급대상 의사는 일반직 의사와 전임전문직 의사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지급대상이 일반직 의사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법문을 개정하고 있음.

○ 제1조(목적)에는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보수와 유사한 성격의 특수업무수당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실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1조의 대상에서 전임전문직의사를 삭제하였고, 제2조 수당지급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현행조례 제2조의 전임전문직의사를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현행조례 제3조의 전임전문직의사의 계약직 공무원이 해임될 때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는 규정을 전임전문직의사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음.

나. 수당지급 근거 및 문제점

○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의무직렬 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음.

○ 교육청은 1993. 7. 15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음(별표 참조).

○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 별표1에 의하면, 2호 654,000원, 3호 및 4－가호가 554,000원 4－나호는 471,000원이며, 서울특별시의 각 병원 및 22개 보건소근무 의무직렬 공무원과 비교하여 수당지급 체계 및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므로 우수인력의 확보, 사기진작 및 양질에 의료서비스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

○ 서울특별시 병원 및 보건소근무 의무직렬공무원은 1993. 1. 1부터 자격증 소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전문의 2, 3급은 710,000원, 4, 5급은 609,000원

일반의 2, 3급은 710,000, 4급은 554,000원, 5급은 518,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의무직렬공무원 수당인상 대비표 및

일반직의사 초임(5급 1호봉)의 대비표는 별첨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결어

○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지방의무직렬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명과 조문배치 및 수당지급 대상의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법문을 개정하였으며, 구 조례와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어, 전문 개정으로 볼 수 있음.

○ 의무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실질상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각 병원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수당체계와 통일을 기하고, 동일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특히 계급 및 소지자격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 교육청에서는 1993. 7. 15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후속 행정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됨.

○ 다만, 수당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별도로 특별히 검토되어야 마땅하나 '94년도 예산안에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됨.

이상 報告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本 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敎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診療業務手當支給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의 異議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의무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액은 별표의 지급구분표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2－3급	710,000원	710,000원
4급	609,000원	554,000원
5급	609,000원	518,000원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로 한다.

○委員長 李喆鎬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長時間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議事日程 뿐만 아니라 1993年度 常任委員會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는 順序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21分 散會)